

중소기업청공무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중소기업청공무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451호)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권고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양정 등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1) 징계부가금 양정 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이 기대됨
- 2)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정 감면 및 감면신청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징계부가금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1조)

- 1) 징계부가금의 부과업무처리 소관부서를 운영지원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징계부가금 징수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2)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하여 부가금징수를 신속히 할 수 있고 재산도피 은닉 등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공무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전화 : 042-481-4339, Fax : 042-472-3266)

별첨 중소기업청공무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 제정(안) 전문 1부. 끝.